

2025년 『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』 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「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3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
- (사업목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전직장려수당, 취업 연계를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을 도모
- (지원대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(만 15세 이상~만 69세 이하)
 - * 지원 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
- (신청기간) '25년 1~12월
 - *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- (지원내용) ①취업 교육 및 ②전직장려수당(최대 100만원) 분할 지원,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및 ④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

세부사업		주요 내용
취업 교육	기초	■ (e러닝) 본격적 구직활동 전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해 취업시장 이해, 변화관리, 자아성찰 및 재취업 성공 사례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
	심화	■ (현장교육)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해 1:1 상담, 직무 적성 검사, 분임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 교육
전직장려수당		■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 지원(60만원) 및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(40만원) (최대 100만원, 2회 분할 지급)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		■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·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,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
심리회복지원		■ 당일형·숙박형 산림치유(휴식)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

2

세부 내용

< 2025년 특화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>

2024년 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지원)		
1] 재취업교육		
구분	지원방식	비고
기초	e러닝, 5시간	-
심화	현장, 25시간	교육수당 20만원
특화	기관별 상이함	교육수당 20~25만원
2] 전직장려수당		
구분	금액	지원요건
1차	40만원	· 구직활동 · 심화교육/국취IAP/컨설팅/취업
2차	60만원	· 취업완료 · 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생애 1회 지원 ☞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중복 불가 		
신 설		
신 설		

2025년 희망리턴패키지(특화취업지원)		
1] 취업교육		
구분	지원방식	비고
기초	e러닝, 10시간	-
심화	현장, 30시간	교육수당 35만원
☞ 특화교육 폐지, 기초+심화 교육 강화		
2] 전직장려수당		
구분	금액	지원요건
1차	60만원	· 구직활동 · 심화교육/취업
2차	40만원	· 취업완료 · 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'22~24년(최근 3년) 중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 없을 시 재지원 가능 ☞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병급 허용 ☞ 구직활동 독려 위해 차수별 지원금액 변경 		
3]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		
희리패 취업교육 (기초+심화) 수료 소진공	→ 국취 참여 (I·II유형) 고용부	→ 연계수당 지급 소진공
☞ 월 20만원 추가 연계수당 지원(최대 6개월)		
4] 심리회복지원		
구분	지원방식	비고
당일형	5시간	· 산림치유(휴식) 프로그램
숙박형	1박 2일	· 산림치유(휴식) 프로그램 · 심리상담 프로그램
☞ 전액 국비 지원, 동반 1인 가능		

- 지원방향** : 폐업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,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심리회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화취업지원 실효성 제고
- 지원규모** : 총 20,400건 내외
*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
- 신청방법** : 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 사이트 온라인 신청

- (제출서류) 개인정보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,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
가.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순번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1	신청서 및 체크리스트	온라인 작성	-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	-
3	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단,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	폐업 예정자 폐업자
4	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단,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	매출액 확인
5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별건강 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(고용,산재) * 상시근로자 有	직접 발급 후 제출(택1) 단,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	상시근로자 수 확인

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 없음

나.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배우자

순번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1	신청서 및 체크리스트	온라인 작성	-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	-
3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직접 발급 후 제출	가족관계 확인
4	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	업무편람 서식[6-2] 제출	-

② 전직장려수당(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)

- (지원대상) 폐업 소상공인 ※ 배우자 미지원
- (지원규모) 8,000건
- (지원내용) 1차 60만원,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
- (지원요건)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·지급 가능

구분	세부 요건	
1차 (60만원)	구 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대상)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, 아래 요건을 충족(택 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전체이력, 직종명(코드)포함)
2차 (40만원)	취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대상)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기간이 30일 이상 - 1차 지급 완료된 경우만 2차 신청 가능

- (지원제외) 미폐업자,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,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

2024년		2025년	
기초 ○ → 심화 ○ → 1차 X	→	◆ 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심화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→	◆ 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X	→	◆ 심화교육 수료 후 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X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→	◆ 1차 신청·지급 후 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→	◆ 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국취IAP ○ → 1차 X	→	◆ 심화교육 수료 후 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국취IAP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→	◆ 2차 신청 가능	

- (신청기한) 1차 수당은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,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
- (제출서류) 개인정보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,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
가. 1차(60만원) 신청

순번	제출 서류	비고
1	신청서	온라인 작성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
3	폐업사실증명원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4	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5	통장사본	신청인 명의 계좌
6	(취업 시) 근로계약서	신청인이 취업한 기업
7	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* 전체이력발급, 직종명(코드)포함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

나. 2차(40만원)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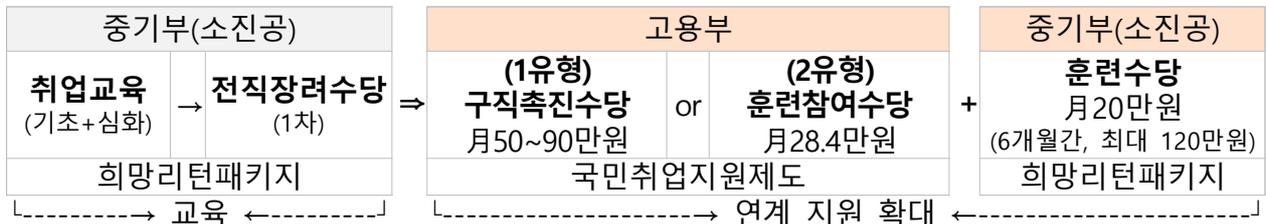
순번	제출 서류	비고
1	신청서	온라인 작성
2	개인정보수집·이용/제공동의서	온라인 작성
3	폐업사실증명원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4	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세무서 또는 온라인(국세청 홈택스) 발급
5	통장사본	신청인 명의 계좌
6	(취업 시) 근로계약서 (퇴사 시) 경력증명서	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
7	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* 전체이력발급, 직종명(코드)포함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

- (유의사항)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전직장려수당 신청·접수는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

- (지원대상) 취업교육 수료(예정) 폐업 소상공인 ※ 배우자 미지원
- (지원규모) 2,000건
- (지원절차) 취업교육(기초+심화) 수료→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→수당 지급
 - *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고 취업교육을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
- (지원내용)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* 지급
 - * 연계 수당은 지원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수급 자격에 따라 최종 지급 결정됨

< 희망리턴패키지+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>



- (지원방법) 취업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,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*
 - *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정보로 지급하며, 필수 서류 제출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음
- (유의사항)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'종료', '유예'로 확인 되는 등 연계 수당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종료됨

[참고]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
 <p>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</p>	 <p>고용복지+센터</p>	 <p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/p>
온라인 신청 (work24.go.kr)	오프라인 신청 (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)	신청 대행 (공단 지역센터/심화교육기관)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문의: (국번없이) 1350

④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

- (지원대상) 폐업(예정) 소상공인(동반자 1인 포함)
- (지원규모) 5,000건 이상
- (지원절차) 유형별(당일형/숙박형)·지역별 프로그램 참가자 상시 모집
→폐업(예정) 소상공인 신청→선정 이후 프로그램 개별 참여
- (지원내용)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산림치유(휴식) 프로그램, 트라우마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장소
오감걷기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숲속의 치유 요소(경관, 향기, 피톤치드 등)를 느끼며 걷기를 통한 자연과의 교감과 혈액 순환 증진 도모 	실외
해먹명상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숲속 해먹에서 휴식을 취하며 활력 충전 ▶ 숲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원기 회복 	실외
밸런스 테라피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도구(폼롤러, 편백봉, 스파이크트윈롤러 등)를 활용하여 상체부터 하체까지 이완시키며 전신을 스트레칭하여 신체균형, 가동범위 강화 	실외 실내
싱잉볼 명상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싱잉볼 특유의 공명과 진동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이완 	실내
다도 명상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차를 내리는 과정과 색(色), 향(香), 미(味)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참가자가 함께 심리치유 	실내

* [당일형, 5시간] 국립산림치유원(1개소), 국립숲체원(7개소)
[숙박형, 1박2일] 국립치유의숲(9개소)

- (참여방법) 프로그램별 운영 기간·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
- (유의사항) 프로그램별 참가자 모집 현황에 따라 운영 일정 변동 가능

3

기타 참고사항

(추진일정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취업교육	기초											
	심화											
전직장려수당												
국취 참여연계												
심리회복												

※ 교육기관 운영,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(신청기간) 25년 1월 ~ 예산 소진시 까지

구분	신청기간	비고
취업 기초교육	'25. 1. 3. ~ '25. 11. 30.	-
취업 심화교육	'25. 2월 중 ~ '25. 11. 30.	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상이함
전직장려수당	'25. 2월 중 ~ 예산 소진시	-
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	'25. 2월 중 ~ 예산 소진시	-
심리회복지원	'25. 2월 중 ~ '25. 11. 30.	-

(문의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
참고 1

취업 기초교육(e러닝) 수강 방법

- (교육 신청) ①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에서 기초교육 신청·선정된 이후 ②공단 지식배움터(edu.sbiz.or.kr)에서 e러닝 교육 수강
 - ※ 신청인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, 교육 수강 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·선정 과정 필요함
- (수강 방법) 공단 지식배움터에 게시된 “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)” 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5개 과정(10시간) 신청 후 수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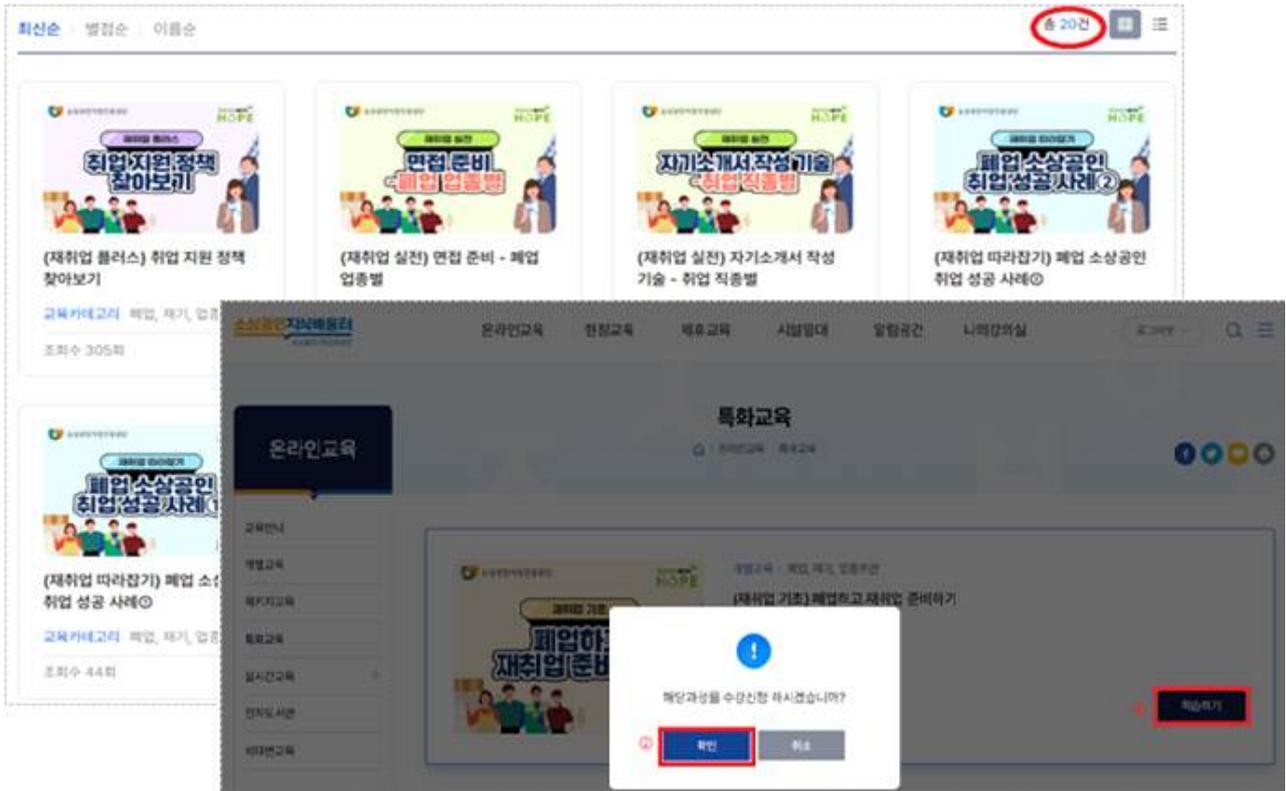
① 지식배움터 접속(로그인必) → [온라인교육] 클릭 → [특화교육]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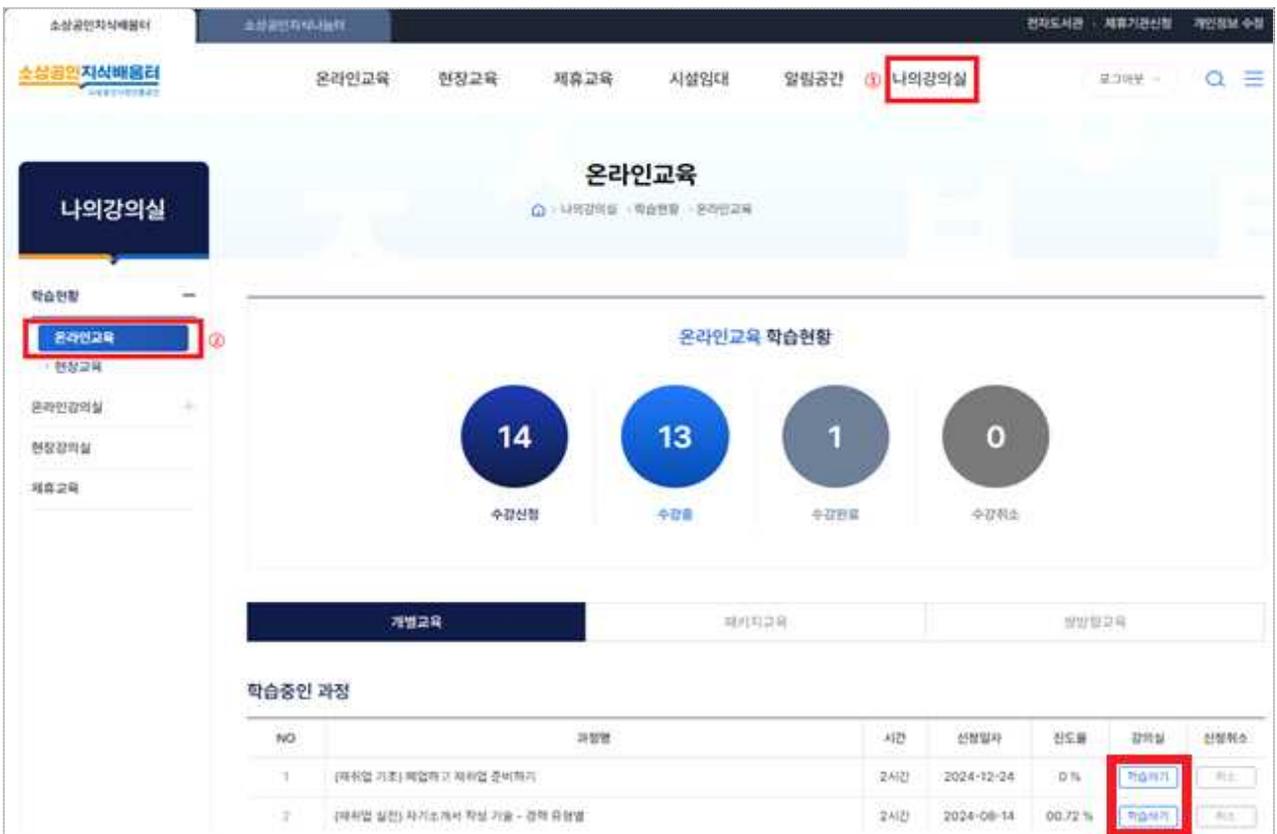
② 희망리턴패키지(재취업) 선택 → [검색] 클릭



③ 기초교육 e러닝 콘텐츠(20개)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5개 선택 후 신청



④ [나의강의실] 클릭 → [온라인교육] 클릭 → 신청 과정별 [학습하기] 클릭



참고 2

전직장려수당 Q&A

① 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입니다. 제가 구직 활동 또는 취업한 상황인데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☞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만 지원합니다.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취업 교육만 추가 지원하며, 교육 신청 시 '가족관계 입증 서류'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②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나,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.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?

☞ 전직장려수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이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.

③ '24년에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. '25년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을 따릅니다. '25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이 변경되어,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'25년부터 1차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수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5년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 경우

2024년		→	2025년	
기초 ○ → 심화 ○ → 1차 X		→	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심화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	→	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X		→	심화교육 수수료 후 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X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	→	1차 신청·지급 후 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컨설팅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	→	2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국취IAP ○ → 1차 X		→	심화교육 수수료 후 1차 신청 가능	
기초 ○ → 국취IAP ○ → 1차 ○ → 취업(퇴사) → 2차 X		→	2차 신청 가능	

* '24년 취업 후 퇴사한 경우도 근속 기간을 충족했다면 2차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

④ 과거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았는데 '25년에 다시 신청되나요?

☞ 최근 3년간('22~'24년)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별첨 1

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첨 2

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